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04월 16일

사천시
공양면
장의인
공양면장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**	이** 1966-03-03	경상남도 사천시 공양면 공양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4-08